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65

발의연월일: 2021. 3. 12.

발 의 자: 강준현·김상희·김승원

박상혁 • 박성준 • 이수진

인재근 • 진성준 • 최혜영

홍성국 · 홍정민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토교통부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땅에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서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수위 강화와 함께 관련 직무종사자에 대한 부동 산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,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일정 기간 종사하였던 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해당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, 국토교통 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며,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신고) ① 국토교통부,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일정 기간 종사하였던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직무종사자등"이라 한다)은 토지, 주택 등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해당 거래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직무종사자등의 범위, 신고의 대상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.

제5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신고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무종사자등이 주택, 토지 등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9조의2(직무종사자 등의 부동
	산 거래 신고) ① 국토교통부,
	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
	일정 기간 종사하였던 사람(이
	하 이 조에서 "직무종사자등"
	이라 한다)은 토지, 주택 등 부
	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국토교
	통부장관에게 미리 해당 거래
	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	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
	따라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
	를 확인하고 제9조제2항에 따
	른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
	조사하여야 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직무종사자등
	의 범위, 신고의 대상・절차 및
	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
	<u>사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</u>
	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57조(벌칙) ① 제9조제2항을 위	제57조(벌칙) ①
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	
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,	

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
 자

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

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<신 설>

② (생략)

제5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2. • 3. (생략)

	<u>.</u>
	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
	그 사실을 아는 제3자가 제1항
	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
	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
	<u> 징한다.</u>
	<u>③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4]	58조(벌칙) ①
	1. (현행과 같음)
	1의2.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
	여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
	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	2. • 3. (현행과 같음)